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 관**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정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①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1. 고용정책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 영에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관**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기업청장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관** **제4조(임기)**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관**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관** **제6조(회의)**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관** **제7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2.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3.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4. 근로복지전문위원회
 5.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
- ⑤ 정책심의회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심의 사항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에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2.8.22.>
1. 법 제10조제2항제5호의 사항: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2. 법 제10조제2항제6호의 사항: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3. 법 제10조제2항제7호의 사항: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4. 법 제10조제2항제8호의 사항: 근로복지전문위원회
 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관** **제8조(조사·연구위원)** ① 정책심의회에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할 9명 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 관** **제9조(협의요청)** 정책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관** **제10조(위원의 수당)** 심의회등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조사·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관** **제11조(간사)** ① 심의회등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 관**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등의 위원장이 정한다.
- 관**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2016.1.22.>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나. 고용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

관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관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

②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도

1.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2. 고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전문위원회에 요구한 사항을 연구하거나 심의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위원(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고용정책 관련 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고용정책 관련 기관의 장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1.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속하는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2.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속하는 시·도의 고용정책 관련 부서장

④ 실무위원회에 지역의 인력 수급 상황 등을 조사·연구할 5명 이내의 조사·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연구위원은 고용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군·구 고용심의회)** 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 사항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그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 중에서 단독 또는 공동 위원장을 지명한다.

③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은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은 시·군·구 고용심의회가 심의한 내용과 심의 결과를 지역고용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①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고용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고용심

② 시·군·구 고용심의회 위원장은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심의회 위원장이 정한 운영세칙에 따라 시·군·구 고용심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

관 **제19조(준용)**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군·구 고용심의회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관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용심의회 및 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실무위원회, 시·군·구 고용심의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

관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관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려면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③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의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

2. 국가가 그 의결로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정책

[전문개정 2014.7.21.]

관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① 고용영향평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정책의 시행에 따른 고용과의 연계성 및 고용창출의 경로

2.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예상되거나 발생한 일자리의 증감

3. 해당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관련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질 변화

4. 일자리의 증감이나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1.]

관 **제22조의3(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언 또는 권고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선대책의 시행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7.21.]

관 **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8항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를 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2014.7.21.>

[제목개정 2014.7.21.]

관 연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그 밖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그 자문에 대한 답변과 조사·연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

관 연 **제25조(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하
야 할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을 통한 관리대상으로 결정된 일자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일자리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

관 연 **제26조(자료의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관 연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규 ② 제1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에 따
[본조신설 2013.6.11.]

관 연 **제27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 간의 정합성(整合性)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관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잡월드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잡월드 입장권 및 체험관광권의 판매
2. 한국잡월드 시설의 임대
3. 기념품의 제작·판매
4. 직업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5. 한국잡월드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한국잡월드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수익사업 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③ 한국잡월드는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2.]

관 연 **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①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 중소기업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복리후생시설, 그 밖에 고용관리의 현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지원의 대상·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금 지원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

관 연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정지·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1

관 연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7.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 지원 등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

관 **제30조의2(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이하 "고용재난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
② 단장은 고용노동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고용·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③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의 규모 및 실태, 필요한 지원의 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한 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재난조사단은 실업 등 피해상황 조사에 필요한 경우 도산·실업 등이 발생한 사업의 사업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7.21.]

관 연 **제30조의3(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재난 극복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6
1.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른 예비비의 사용 및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른 특별지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요청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과 보증조건 우대의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 관련 법령에 따른 조세감면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의 유예 및 같은 법 제392

-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 6. 그 밖에 고용재난지역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본조신설 2014.7.21.]

관 연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
규

1.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관 연 **제32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의 실시를 위한 실업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실업대책의 시행 주체, 종류, 규모 및 시기를 정하
②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많은 인력을 사용하는 사업
2.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3. 고용 상황의 변화에 따라 쉽게 규모를 변경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사업

관 연 **제33조(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사
1. 긴급하게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2. 급여의 일부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았을 것

관 연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실업의 해소와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공익사업을 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취로(就勞)사업 등 고용촉진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그 밖에 실업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실업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 지원이나 의료 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관 연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자 지원사업
2.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사업
3. 제34조 각 호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관 **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관 연 **제37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직업안정기관에 구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수행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실시하는 사업의 시행 주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로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장기 구직자에게 취로 기회를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관 연 **제38조(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 시설에 그 훈련

관 연 **제39조(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단에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

관 연 **제4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 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가격)
2. 차입처
3. 차입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한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관 연 **제41조(보고 및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관 연 **제42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2.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 제37조에 따른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관 연 **제43조(업무의 위탁)**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2. 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경영자총협회
5.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6.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관 연** **제4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1. 법 제1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에 따른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및 이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지: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12.]

- 관**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 관 규**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대통령령 제21928호, 2009.12.30.> **부칙(집기)**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방고용심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고용심의회, 지방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 지방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 및 회 의 전문위원회, 지역고용심의회 실무위원회 및 지역고용심의회 의 시·군·구 고용심의회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 제18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고용
 -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제1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 ②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6. 「고용정책 기본법」
 -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을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 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 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⑦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의3"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으로, "비영리법인·단체"를 "법인·단체"로 한다.
 - ⑧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을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1조제5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 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을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 ⑪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의5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

부 칙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12.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부칙(집기)**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 . <생략> . . . ,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2항제3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접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⑭부터 <187>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접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⑳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제7조제5항제5호,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7항, 제23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3항, 제30조제1항·제2항 후단·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호 및 별표의 1, 일반기준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㉑부터 <136>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 \(접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062호, 2012.8.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3.2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접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3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4590호, 2013.6.11.>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5498호, 2014.7.21.>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접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2>까지 생략

<333>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34>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046호, 2015.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122호, 2015.2.26.>

이 영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248호, 2015.5.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접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3호 중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6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접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제1항"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접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0>까지 생략

<261>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262>부터 <388>까지 생략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  